

자 산 교 환 명 세 서

과 세 연 도 :

1. 자산교환법인

①법 인 명		②사업자등록번호	
③대 표 자 성 명		④업종(영위기간)	
⑤본점 소재지	(☎ :)		

2. 상대방 법인

⑥법 인 명		⑦사업자등록번호	
⑧대 표 자 성 명		⑨업종(영위기간)	
⑩본점 소재지	(☎ :)		
⑪자산교환법인과 의 관계		⑫교 환 일	

3.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 명세

⑬자산명	⑭소재지	⑮면적(m ²)	<16>취득일	<17>용도(사용기간)	<18>시가	<19>장부가액
계						

4. 교환 취득자산명세

<20>자산명	<21>소재지	<22>면적(m ²)	<23>상대방 취득일	<24>상대방의 용도(사용기간)	<25>취득 후 용도	<26>시가	<27>상대방 장부가액
계							

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8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9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세 무 서 장 귀 하

작 성 요 령

1. ④와 ⑨란의 업종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 분류중 중분류에 따라 기입하고, 당해업종의 영위기간을 괄호안에 기입합니다.
2. ⑪란은 교환당사법인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 해당여부를 기입합니다.
3. <18>과 <26>란의 시가는 교환당시의 시가를 말하며,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기입합니다.